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10. 18 선고 2018가단443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론 종결 2018. 8. 30

판결 선고 2018. 10.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1997. 9. 26. 접수 제2211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출판사'가 출판하는 도서 등의 공급을 위하여 이라는상호로 여수지사를 1997년 9월경부터 운영하면서, 도서공급대금의 담보 목적으로 원고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2003년 6월 말경 원고가 위 여수지사 대리점을 폐업하고 피고와의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소멸하였다.

설령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산 완료 시점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위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박혜영

별지